

2024

Jun_1st

465호



JOYANG
CUSTOMS
SERVICE CORP.

Customs FOCUS



관세법인 조양
JOYANG CUSTOMS SERVICE CORP.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CONTENTS



01 관세사칼럼

중국의 관세법_24년 12월 1일 시행_3장과 4장 번역



02 이주의초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03 판례연구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



04 개정법령

최근 개정 법령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05 질의응답

자주 찾는 관세 무역 질의에 대한 응답



06 기타무역소식

관세청 공지 · 무역 뉴스 등 기타 무역소식



제3장 납부세액

제23조 - 관세는 종가징수, 종량징수, 복합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종가 과세 대상 세액은 과세 가격에 비례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종량제 징수를 시행하는 경우 과세액은 물품 수량에 고정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복합 과세 대상 세액은 과세 가격에 비례 세율을 곱하고 상품 수량에 고정 세율을 곱한 합을 계산한다.

제24조 -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거래 가격과 상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 장소에 도착한 후 하역하기 전의 운송, 관련 비용 및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은 판매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로 물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할 것으로 본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조정된 총 가격을 말하며, 직접 지불한 가격과 간접 지불한 가격을 포함한다.

수입 상품의 거래 가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제한, 재화의 재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 및 재화의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을 제외하고 구매자의 재화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 (2) 해당 상품의 거래 가격은 연계 판매 또는 기타 요인의 영향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3)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 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수익도 얻지 않으며, 비록 수익이 있지만 본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4)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지만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 수입 물품의 다음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1)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 이외의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 (2) 해당 물품과 일체화된 용기로 간주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재 비용과 포장 노무 비용
- (4)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는 자재, 도구, 금형, 소비재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의 가격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개발 및 설계와 같은 관련 서비스의 비용을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적절한 비율로 부담하는 비용
- (5)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상품 관련 로열티
- (6)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을 수입한 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과 관련된 수익

제26조 - 수입 시 물품가격에 명시된 다음 비용과 세금은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작업장, 기계, 장비 및 기타 상품을 수입한 후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보수 및 기술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용, 단, 유지 보수 비용은 제외한다.
- (2) 수입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 장소에 도착 후 하역 후 운송 및 관련 비용/보험료
- (3) 수입 관세 및 내국세

제27조 -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이 이 법 제24조 3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래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납세자와 가격 협상을 한 후 다음 가격으로 상품의 과세 가격을 평가하여 계산한다.

- (1) 해당 물품과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
- (2) 해당 물품과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판매되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
- (3) 물품을 수입하는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1차 판매 과정에서 수입 물품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 물품을 특별한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최대 총 판매량의 단위 가격. 다만, 이 법 제28조에 규정된 항목을 공제한다.
- (4) 다음에 열거된 항목의 총합에 따라 계산된 가격: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비용 및 가공 비용,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동급 또는 동종 물품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이윤 및 일반 비용,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지에 도착하기 전 운송 및 관련 비용, 보험료.
- (5)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

납세자는 세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항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항목의 적용 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 이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항목을 공제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제1차 판매 과정에서 등급 또는 동종 상품을 판매할 때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 비용 및 통상 지불하는 수수료
- (2) 수입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 장소에 도착 후 하역 후 운송 및 관련 비용/보험료
- (3) 수입 관세 및 내국세

제29조 - 수출 물품의 과세 가격은 물품의 거래 가격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수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기 전의 운송, 관련 비용 및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출 상품의 거래 가격은 상품을 수출할 때 판매자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직접 받고 간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총 가격을 말한다. 수출 관세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0조 - 수출 상품의 거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납세자와 가격 협상을 한 후 다음 가격으로 상품의 과세 가격을 계산한다.

- (1) 해당 물품과 동시 또는 유사 시기에 같은 국가/지역으로 수출되는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
- (2) 물품과 동시 또는 유사 시기에 동일한 국가/지역으로 수출되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
- (3) 다음 각 호의 총합에 따라 계산된 가격: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재 비용, 가공 비용,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비용, 경내에서 발생하는 운송 및 관련 비용, 보험료
- (4)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

제31조 - 세관은 법에 따라 신청이 있거나 또는 직권에 의거 수출입 물품 및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상품 분류 및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화학검사, 검험(상품분석)검사를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세관에서 확인한 화학검사 및 검험검사 결과를 과세가격, 상품 분류 및 원산지를 결정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세제 혜택과 특수 상황에서 관세 부과

제32조 - 다음과 같은 수출입 화물 및 수입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 (1) 국무원이 규정한 면제 한도 내의 1건 화물
- (2)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물 및 견본
- (3) 출입국 운송 수단에 적재되어 도중에 필요한 연료, 재료 및 식용품
- (4) 세관에서 반출되기 전에 훼손되거나 멸실된 물품 및 반입 물품
- (5)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물자
- (6)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하는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및 수입 물품
- (7) 기타 물품 및 수입 물품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

제33조 - 다음과 같은 수출입 물품 및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한다.

- (1) 세관에서 반출되기 전에 파손된 물품 및 입국 물품
- (2)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하는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 및 수입품
- (3) 기타 물품 및 수입 물품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다.

전항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관세 감면은 세관이 인정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리된다.

제34조 - 국무원은 국익 수호, 대외 교류 촉진, 경제 사회 발전, 과학 기술 혁신의 필요에 따라 특별 관세 우대 정책을 수립하고 기록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5조 - 세금 감면 상품은 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 감독하에서 사용해야 하는 감면 받은 수입화물은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 기간 내에 양도, 타지역 이전 또는 기타 처리를 해야 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추가 세금이 필요한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관의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하는 감면된 수입물품 역시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6조 - 보세화물을 국외로 재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재반출하지 않고 국내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가공무역용 보세 수입 자재 또는 그를 사용한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세금 유예 이자도 부과된다.

제37조 - 일시반입 또는 일시반출하는 다음의 화물 및 물품은 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화물 및 물품은 반입 또는 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출 또는 재반입하여야 하며, 재반출 또는 재반입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전람회, 무역 박람회, 회의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되거나 사용되는 화물 및 물품
- (2) 문화 및 체육교류 활동에 사용되는 공연 및 경기용품
- (3) 뉴스 보도를 하거나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 장비 및 용품
- (4) 과학 연구, 교육, 의료 및 보건 활동에 사용되는 기구, 장비 및 용품
- (5) 본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된 활동에 사용되는 교통수단 및 특수차량

(6) 견본품

(7) 장비를 설치, 시운전 및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 및 도구

(8) 기 포장된 화물을 담은 포장재

(9) 기타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물 및 물품

전항에 열거된 화물 및 물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반출되지 않거나 재반입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8조 - 이 법 제37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일시 반입된 화물 및 물품은 해당 화물 및 물품의 과세가격과 국내 체류기간과 감가상각기간의 비율에 따라 수입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화물 및 물품이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재반출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추가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법 제37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일시 반출된 화물이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국내로 다시 운송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9조 - 품질, 규격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물품을 원상태로 다시 국내로 운송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품질, 규격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 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입품은 수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전항의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해관총서가 제정한다.

제40조 - 수출입 물품의 송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손상, 부족, 품질 불량 또는 규격 불일치로 인해 무료로 보상하거나 교환한 동일한 물품은 수출입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료로 교체된 원래 수입 물품이 해외로 반환되지 않거나 원래 수출 물품이 국내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원래 수출입 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납세자는 원래 수출입 계약에서 합의한 보상 청구 기간 내에서 원래 수출입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무료 보상 또는 교환 물품의 수출입 절차를 위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사점>

위 조항 중 국내 관세법과 확연히 대비되는 조항은 제 29조 및 제 39조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수출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증가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출잠정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잠정세율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수출특별세율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세율은 잠정세율과 특별세율을 합산된 세율로 합니다.

위 수출세 제도와 더불어 중국은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이 약 40%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교역시 가공무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원자재 수입시 세금 납부 후 수입하고 완성품 수출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출이 예정된 상태에서 부품, 원재료 등이 수입될때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수출 시 관세 면제가 확정되도록 하는 보세 및 사후관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진출기업 대부분이 이러한 수출형 가공무역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가공 수 수출 또는 중국 내수판매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평가되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중국 관세법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1. 개정사유

-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 명확화 및 유사 제도(통합공고)와의 통일성 강화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을 위한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제7조 개정)

-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2)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통일성 강화 (제7조 개정)

-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확인 면제의 예외 법령 중 세관장확인 고시에 누락된 일부 법령 반영(종전 13개 → 변경 18개)

*신설조항

- 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너. 「방위사업법」
- 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러. 「위생용품 관리법」

3)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 (제8조 개정)

-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 (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는 품목의 수가 10개(HSK 10단위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무분별할 요건확인기관의 요청사례 감소 예상됨

4)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제8조 개정)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 (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5)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2 개정)

- 「문화재보호법」의 법령 변경사항 반영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명칭 변경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관련 서식 변경 반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 (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6)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별표 1·2 개정)

-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 · 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2개 품목 추가, 34개 품목 변경, 1개 품목 제외

- ① 마약류관리법 :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제외 1)
- ②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추가 1)
-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단순 자구 수정 반영 (변경 1)
- 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용어 및 법률명 변경 반영 (변경 33)
- ⑤ 원자력안전법 :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전자빔용기기) 변경요청 사항 반영 (추가 1)

* (수입) 13개 법령 31개 품목 추가, 232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일부발체]

-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신규 품목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전기찜질기 등), 누락 품목(전기냉수기 등), 삭제 품목(와플기기) 변경 요청사항 및 단순 자구 수정 반영 (변경 20)

-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법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수소불화탄소) 및 요건 확인 위탁기관 변경
(한국석유화학협회) 요청사항 반영 (추가 7, 변경 14)
- ③ 화학물질관리법 : 금지물질 추가(농약원제), 「유독물질」, 「제한물질」 고시 개정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변경(유독물질 함량기준 등) 및 금지물질 제외(농약원제) 요청사항
반영 (추가 2, 변경 53, 제외2)
- ④ 종자산업법 : 종자관리요강 개정
식량작물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 변경
(한국종자협회) 요청사항 반영 (변경 18)
- ⑤ 의료기기법 : HSK 2022 개정사항 및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변경

7)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제7조의2·제8조 개정)

- 용어 변경, 띄어쓰기 및 문법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기한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제출기한: 2024.06.19. 까지)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



1.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5.10. 000 또는 “판매자”라고 한다)와 000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국내 독점 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14.6.20.까지 3차례의 계약수정(최초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총 000의 권리사용료(이하 “쟁점권리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9월경 청구법인에 ‘수입신고가격 성실신고(보정·수정)자율점검 안내서’를 발송하면서 000에 지불하는 쟁점권리사용료 가산여부를 점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6.11.18.부터 2017.4.26.까지 000 외 42건의 수입신고건을 수정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5.31.부터 2017.6.1.까지 수정신고한 43건 중 <별지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000 외 24건에 대한 관세 총액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7.3. 이를 거부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한 판매조건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c) 주해 2항에서 “수입물품의 분배 또는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구매자가 하는 지급은, 만약 그러한 지급이 수입물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판매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계약에는 쟁점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쟁점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판매하는 조건이라는 규정이 없고, 쟁점권리사용료는 최초로 계약한 때부터 반환불가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하므로 판매조건이라 볼 수 없다.

2)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하더라도 ① 총 지급된 쟁점권리사용료를 최초계약 체결일로부터 8년 동안으로 균등 안분하고, ② 그 안분된 금액 중 수입된 4개 물품의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 주장

1) 쟁점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쟁점권리사용료는 '판매자의 극비 기술 및 정보가 체화되어 있고,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수입, 판촉,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자로부터 허여 받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OOO가 부착되어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극비 지식 등 일체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인 쟁점물품을 등록, 수입, 판촉, 판매, 유통하는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쟁점권리사용료는 분배·재판매권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한 것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출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성립된다.

2)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적정하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 1)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 2)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쟁점권리사용료는 '판매자의 극비 기술 및 정보가 체화되어 있고, 판매자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판촉·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자로부터 허여 받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특허권이나 노하우처럼 청구법인이 독점권을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인 권리에 포함되는 점,

3)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상표OOO가 부착되어 있고, 쟁점물품에는 판매자의 극비 지식 등 일체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인 쟁점물품을 등록, 수입, 판촉, 판매, 유통하는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4) **쟁점권리사용료는 분배·재판매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출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성립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권리사용료는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총 지급된 쟁점권리사용료를 최초계약 체결일로부터 8년 동안 연단위로 균등하게 안분하고, 그 안분된 금액 중 수입된 4개 물품의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쟁점계약은 개별 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수의 품목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책정한 점, 최초계약 제6.1조에 따라 쟁점물품 중 일부를 수입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쟁점권리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사용료를 연도별로 균등 안분하여야 한다거나, 10개 품목 중 실제 수입된 4개 품목의 비율만큼 안분해서 가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V. 시사점

관세법 제 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 쟁점물품에 판매자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쟁점물품에 판매자의 극비 지식 등 일체가 반영되어 있어 쟁점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고, 쟁점권리사용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모두 판단해야 하므로 권리사용료에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조심-2017-182, 2018-11-19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 고시 제23-51호, '23.8.25)

1. 개정사유

「관세법」 제140조제7항 개정사항* 및 적극행정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 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 . 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1)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 명확화(제15조제3항)

- 검사대상화물 :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
- 특송화물 :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2) 「관세법」제140조제7항에 따라 하역제한 대상물품 규정 (제16조의2 신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하역제한을 요청하는 품목

3) 항공 특송화물 입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제21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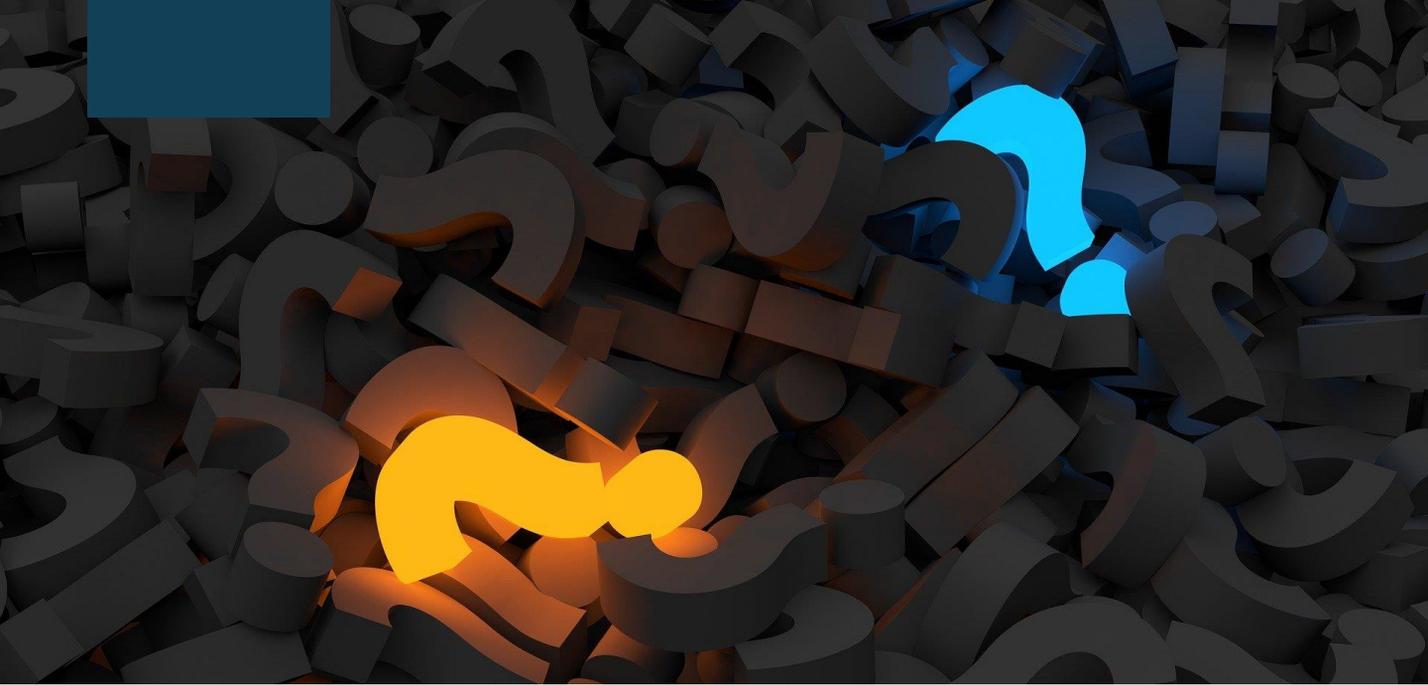
- 항공 특송화물의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에서 30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

4) 용어의 정의

법제처의 행정규칙 용어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선복'을 '적재공간', '시봉'을 '봉인실시', '선(기)용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등

- 1)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김은아 주무관)
- 2) 제출기한 : 2024. 6. 7. (금)
- 3) 제출방법: (전화) 042-481-7827 / (팩스) 042-481-7819 /
(전자우편)kea518@korea.kr



1. 중고물품의 원산지 표시

□ (질의)

Q. 중고물품을 경매로 낙찰받아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고 불분명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A.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Imported from 국명'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중략> ...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 8 조 (원 산 지 표 시 면 제) ① 세 관 장 은 「 대 외 무 역 관 리 규 정 」 제 82 조 에 따 른 원 산 지 표 시 면 제 대 상 이 외 에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물 품 에 대 하 여 원 산 지 표 시 를 면 제 할 수 있 다. ... <중략> ...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2. 수입신고수리 후 징수형태 변경

□ (질의)

Q. 수입신고수리 후 징수형태를 월별납부(43)에서 사후납부(14)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A. 월별납부를 개별 사후납부로 징수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②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시 변경된 고지서 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을 것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③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시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것

* 징수형태 부호 12(개별담보), 13(포괄담보)

출처-CUSTRA

우리 수출시장 뜨겁게 달굴 아랍에미리트發 훈풍 부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 5월 29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됐다.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무기류를 시작으로 압연기·금속 주조기,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 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新중동 지역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으로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고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정식 발효된다. UAE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으로 교역규모는 2020년 94억 달러에서 작년 209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 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및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또한 UAE는 중동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으로 시장 선점 효과

협정이 발효되면 가장 먼저 우리 新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 대부분 품목이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가 확보돼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 외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원유 수입관세 철폐로 물가안정 기여할 듯

이번 협정으로 원유 수입관세가 철폐돼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UAE産 원유의 수입관세를 기존 3%에서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원료 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기존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인 0.25%로 감축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장도 개방돼 우리 기업 진출기회 확대는 물론 K-콘텐츠 확산도 기대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최초로 개방해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한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UAE의 월 평균 한국 게임 지출액은 68.98달러로 중동지역 평균 38.51달러 보다 높았으며, 중동지역의 게임 이용시간은 주중 159분, 주말 218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된다.

다양한 협력 분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위한 근거 마련

한편 이번 한·UAE CEPA에서 新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14개 협력 분야는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 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분야다. 특히 UAE가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新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무역 규범 개선으로 기업 활동 편의 제공

이어 이번 협정을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규범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 UAE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JOYANG
CUSTOMS
SERVICE CORP.

THANK YOU



관세법인 조양
JOYANG CUSTOMS SERVICE CORP.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